

의안번호	제492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1월 1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·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그 수행 사업으로 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,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목적규정에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 법령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(안 제1조)
- 정의규정 중 인용법령 및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(안 제2조제2호·제3호)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사업 신설 및 조문 정비(안 제3조)

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6.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”을 “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자를”을 “소상공인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  
제9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 1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<u>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<u>사</u>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사업) ① 충청북도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11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2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소상</u> <u>공인</u>을 ----- -----</p> <p>3. “청년”이란 「충청북도 청년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청년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충청북도 내 생산품,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</u></p> <p>13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p>

② 진흥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

제19조(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등) ①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관련 주체가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(集積)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 교류,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이용,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·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□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0조(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각종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 정보 등의 제공
2. 종합기술 지도 및 연수 실시
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4.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5. 창업정보 제공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
6.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 설립·운영에 따라 사업을 현행화 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식품유통본부 설립·운영 사업 관련 비용(인건비, 운영비 등) 발생

## 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기업진흥원조례 제3조(사업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 : 13,709백만원(국비 2,095, 도비 11,614)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 15%, 도비 85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계	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
계	13,709	2,626	2,784	2,742	2,767	2,790
국비	2,095	419	419	419	419	419
도비	11,614	2,207	2,365	2,323	2,348	2,371